

2020 평창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04.22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에 따른 여건변화 수용,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,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
- 기 수립된 평창군기본계획 내용에 대하여 시·공간적 여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전제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고

2. 주요골자

- 2020 평창군기본계획
 - 계획인구 : 60,000인(변경없음)
 - 미 래 상 : HAPPY700평창(변경없음)
 - 토지이용계획
 - 올림픽특구 계획 반영
 - 원주~강릉 철도 건설에 의한 평창역, 진부역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도시지역 확장 및 기타사업에 따른 변경
 - 기반시설계획(도로) :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기존 노선 선형변경과 도로 확장 계획에 한하여 반영

3. 참고사항

- 공청회 : 2014. 04. 11(14:00 ~ 16:00)
 - 일간신문(강원일보, 강원도민일보, 국민일보)에 공청회 개최 공고 : 2014.3.25

2020 평창군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개요

1. 계획의 목적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개최도시로서의 위상 확립
- 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반조성
- 동계올림픽특구 등 관련 개발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
- 기 수립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골격을 유지 하면서 제반 여건 변화를 반영

2. 계획의 범위

- 목표연도 : 2020년
- 계획인구 : 60,000인
- 위 치 :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
- 면 적 : 1,463.680km²

3. 여건변화

-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
 -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신설 및 올림픽 개·폐회식장 계획
- 원주~강릉 철도 건설
 - 평창역, 진부역사 입지에 따른 개발수요 및 개발압력이 예상되어 역사 주변에 도시기능 부여

○ 올림픽특구 개발

- 2개 특구 7개 지구 평창군내 총 20.497km² 계획

구 분	위 치	면적(km ²)
평창군 합계		20.497
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	-	16.774
알펜시아·용평리조트지구	대관령면	13.013
관광기반시설지구	대관령면	0.260
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	대관령면	1.035
자연순응형휴양·체험지구	대관령면	1.268
진부 도시재생지구	진부면	1.198
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	-	3.723
스포테인먼트지구	봉평면	3.377
문화창작지구	봉평면	0.346

4. 추진경위 및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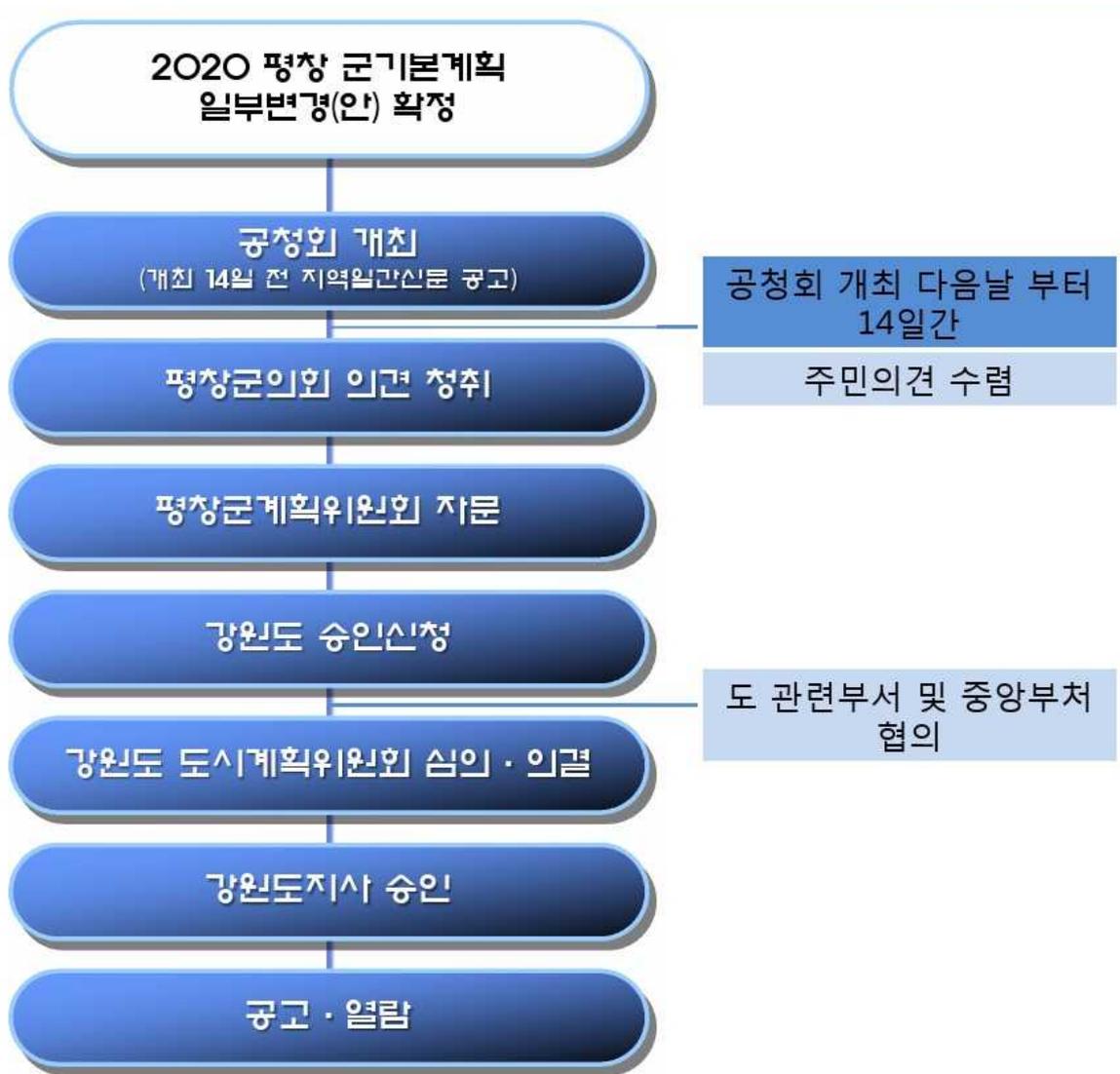
1) 추진경위

- 2012.03.30. : 2020 평창 군기본계획 2015 군관리계획(변경)
수치지형도 제작 용역 계약
- 2012.04.02. : 용역착수
- 2012.06.15. ~ 07.17 : 주민설문조사
- 2013.07. : 2020 평창 군기본계획(안) 관련 자료입수 및 관련계획
검토(올림픽특구, 그린바이오시티 조성 타당성 등)
- 2013.05.03. : 주민설명회(1차)
- 2013.07.05. : 강원도 사전협의
- 2013.10.11. : 주민설명회(2차)
- 2014.01.16. :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구역지역
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-3호)
- 2014.03.25. ~ 04.14 : 공청회 개최공고 및 주민공람 공고
- 2014.03.27, 28 : 주민설명회(3차)
- 2014.04.11. :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공청회

2) 향후 추진일정

- 2014. 4. 22 :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
- 2014. 5. : 평창군계획위원회 자문
- 2014. 5. : 강원도 승인신청 및 관계부처 협의
- 2014. 7. :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·의결
- 2014. 7. : 강원도지사 승인
- 2014. 8. : 공고 및 열람

5. 군기본계획 결정 절차



6. 주요변경사항

○ 계획인구 설정

- 계획인구 : 60,000인
- 가구당 인구 : 2.18인
- 동계올림픽 특구 계획 및 타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의 변경이 있으나, 계획인구는 60,000인으로 변경이 없음

구 분	단위	2005년	2010년	2015년	2020년	
					기 정	변 경
인구추정 합계 (①+②+③)	인	45,002	53,456	57,078	60,016	61,409
자연적 증가 - ①	인	45,002	44,056	43,278	41,616	
사회적 증가 - ②	인	-	8,400	11,300	15,400	16,793
알펜시아리조트	인	-	6,400	6,800	7,400	
첨단연구단지(그린바이오시티)	인	-	1,000	2,000	5,000	
세계음식문화단지	인	-	1,000	2,500	3,000	
동계올림픽특구	인	-	-	-	-	648
정관장힐링센터	인	-	-	-	-	745
정주환경 향상에 의한 유입 - ③	인	-	1,000	2,500	3,000	
계 획 인 구	인	45,000	53,000	57,000	60,000	
계 획 가 구	가구	18,000	20,542	24,050	27,522	
가 구 원 수	인/가구	2.50	2.58	2.37	2.18	

○ 토지이용계획

- 올림픽특구 계획 반영
- 원주 ~ 강릉 철도 건설에 의한 평창역, 진부역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
- 도시지역 확장 및 신규사업(정관장 힐링센터)에 따른 변경
- 시가화용지 변경 6건
-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12건

구 분		면 적(km ²)			구성비 (%)	
		기 정	증 감	변 경		
총 계		1,463.680	-	1,463.680	100.00	
시 가 화 용 지	합 계	35.433	감) 0.196	35.237	2.40	
	주거용지	5.329	감) 0.255	5.074	0.34	
	상업용지	0.896	-	0.896	0.06	
	공업용지	-	-	-	-	
	관리용지	29.208	증) 0.059	29.267	2.00	
시 가 화 예 정 용 지	합 계	15.855	-	15.855	1.08	
	시가화 예정용지	소 계	5.444	-	5.444	0.37
		주 거	1.197	증) 0.498	1.695	0.12
		상 업	1.566	감) 0.498	1.068	0.07
		공 업	2.681	-	2.681	0.18
	지구단위 계획구역	소 계	10.411	-	10.411	0.71
		주거형	0.457	-	0.457	0.03
		관광휴양형	9.954	감) 0.255	9.699	0.66
		특정형	-	-	-	-
		복합형	-	증) 0.255	0.255	0.02
보전용지		1,412.392	증) 0.196	1,412.588	96.51	

○ 기반시설계획

- 고속국도, 국도, 철도 등 지역간 광역교통 체계와 도시내부 교통체계와의 연계구축
- 기존 교통망 체계와 올림픽 주개최지역 간의 상호연계 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 도로체계 확충
-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계획 반영
- 관광경철도 계획 변경

○ 경관 및 미관계획

- 산림·공원 녹지축 경관 : 백두대간축 ~ 광역녹지 축 보전
- 수변축 경관 : 수변경관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
- 역사문화 경관 : 역사문화자원 특성을 반영한 진입 및 주변경관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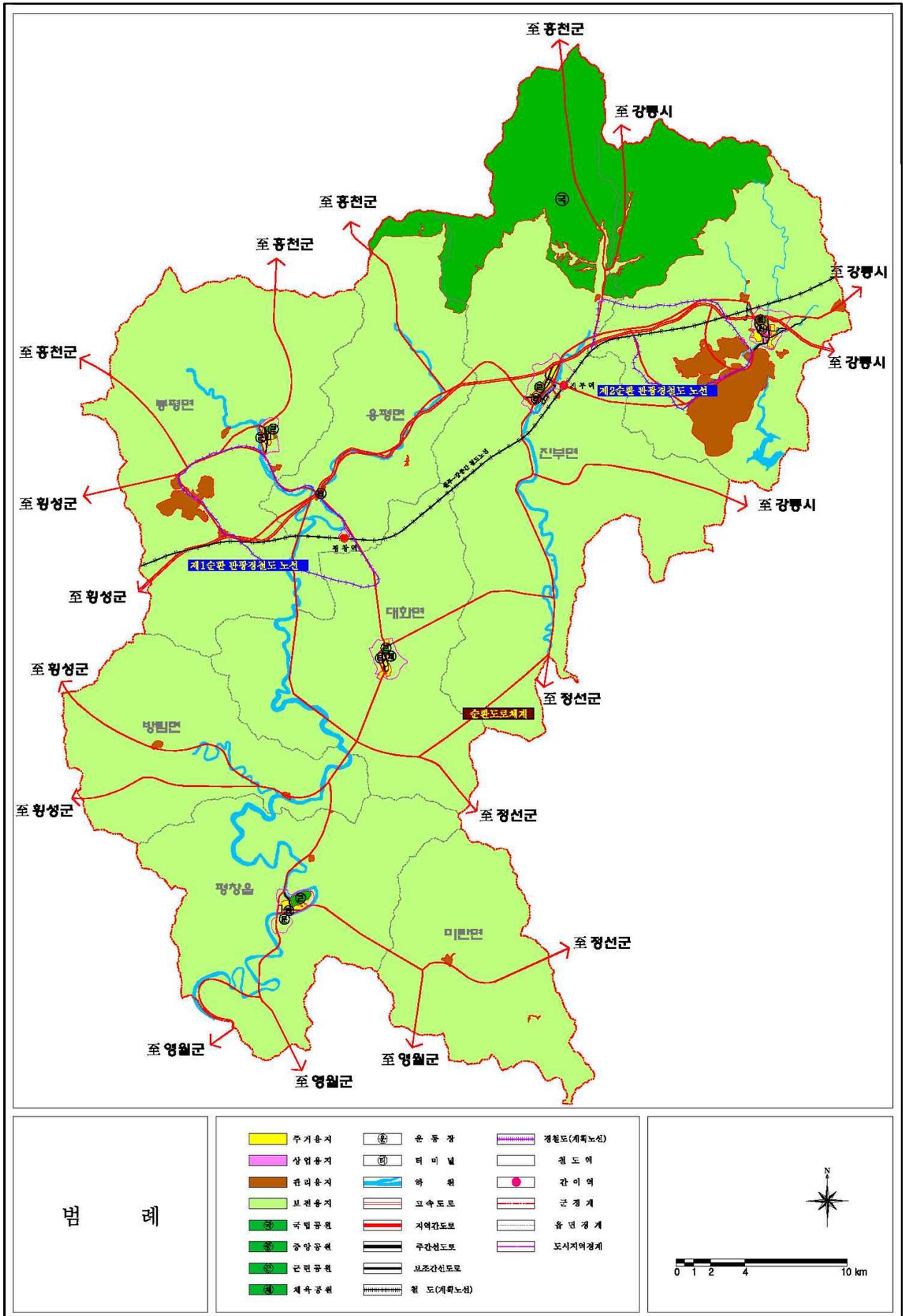
- 도시진입 경관 : 동계올림픽 개최도시, 눈 마을 등 평창 도시이미지 화한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진입경관 형성
- 미관계획은 대관령로와 상업지구 중심로에 기존시가지 및 도로연접 건축물과 상업가로 미관계획을 설정

○ 공원·녹지 계획

- 공원·녹지체계는 기 승인 체계를 유지
- 국립공원 : 오대산국립공원 변경 반영
- 자연공원 : 도시자연공원 폐지(군관리계획 미결정)
- 근린공원 : 횡계제2공원, 횡계제3공원 폐지(장기미집행 시설)
- 체육공원 : 관리계획 현실화 (진부체육시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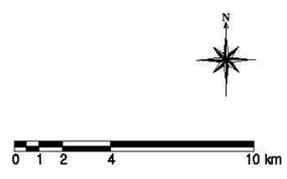
공 원 명	기 능	면 적(km ²)			변경사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합 계		134.713	증) 6.808	141.521	
오대산 국립공원	국립공원	132.844	증) 7.357	140.201	• 환경부고시 반영
횡계자연공원	자연공원	0.335	감) 0.335	-	• 군관리계획 미결정
횡계공원	중앙공원	0.200	-	0.200	
소 계		1.256	감) 0.155	1.101	
평창공원	근린공원	0.681	-	0.681	
대화공원	근린공원	0.117	-	0.117	
창동공원	근린공원	0.187	-	0.187	
가산문화공원	근린공원	0.003	-	0.003	
진부공원	근린공원	0.113	-	0.113	
횡계제2공원	근린공원	0.100	감) 0.100	-	•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
횡계제3공원	근린공원	0.055	감) 0.055	-	•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
소 계		0.078	감) 0.059	0.019	
대화체육공원	체육공원	0.019	-	0.019	
진부체육공원	체육공원	0.059	감) 0.059	-	• 군관리계획 상 체육시설

<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구상도 >



법 레

-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주거용지 | 운 동 장 | 경철도(계획노선) |
| 상업용지 | 터 미 널 | 철 도역 |
| 관리용지 | 하 천 | 간 이 역 |
| 보전용지 | 고속도로 | 군 경 계 |
| 국립공원 | 지역간도로 | 읍 면 경 계 |
| 중앙공원 | 구간선도로 | 도시지역경계 |
| 단면공원 | 보조간선도로 | |
| 체육공원 | 철 도(계획노선) | |



관련법규 발취
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9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내용)

- ① 도시·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·목표에 관한 사항
 2. 공간구조,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
 3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4.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 5.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6.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 7. 공원·녹지에 관한 사항
 8. 경관에 관한 사항
 - 8의2.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
 - 8의3.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
 9. 제2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.

2.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지침

제2장 제2절 목표년도

- 2-2-1.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,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.(예 : 2020년, 2025년)
- 2-2-2. 시장·군수는 5년마다 도시·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,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

3-3-1. 도시·군기본계획의 작성시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(1)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(변경 수립시에는 해당부분만 계획수립할 수 있음)
- (2) 상위계획의 수용
- (3)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
- (4)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
 - ① 자료출처 명시
 - 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
- (5) 적절한 계획기법 적용
- (6) 시설입지의 적정성 확보
- (7) 계획의 일관성 확보